#### ◎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-191호

「금융투자업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

### 1. 개정이유

크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5.7.6. 국회 본회의 의결)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등록요건, 내부통제제도 설정에 관한 세부 내용 등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

# 2. 주요내용

가. 프로젝트투자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적용범위(안 제1-9조) 다수 기업이 참여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프로젝트투자사업의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 지분이 70%이상인 경우에만 허용

나.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출자승인(안 제2-14조)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출자승인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 다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구체화(안 제4-104 조~제4-105조, 별표 2의2, 별지 제3호의4)

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3명 이상 (전산 2명,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1명 포함)으로 명시하는 등 인력·물적설비·사업계획·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등록요건을 구체화

라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기준 구체화(안 제4-106조~ 제4-108조)

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청약 등 업무 수행 및 관련 정보 제공 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의 세부사항을 구체화

- 마. 업무방법 및 내부통제기준 변경시 보고 등 (안 제4-109조)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업무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변경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
- 바. 투자자에 대한 통지(안 제4-110조)

청약기간 만료시 증권의 청약, 발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과 청약증 거금 반확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

## 도록 명시

사. 청약증거금의 관리(안 제4-111~112조)

청약증거금을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(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자의 영업정지, 파산 등) 및 청약증거금의 반환 사유(온라인소액증 권발행인의 증권발행 철회, 부도·해산 등)를 구체화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투자금융팀, 전화: 02-2156-9798, 팩스: 02-2156-9768, 이메일 : gypsoph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투자금융팀

(주소: 100-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)